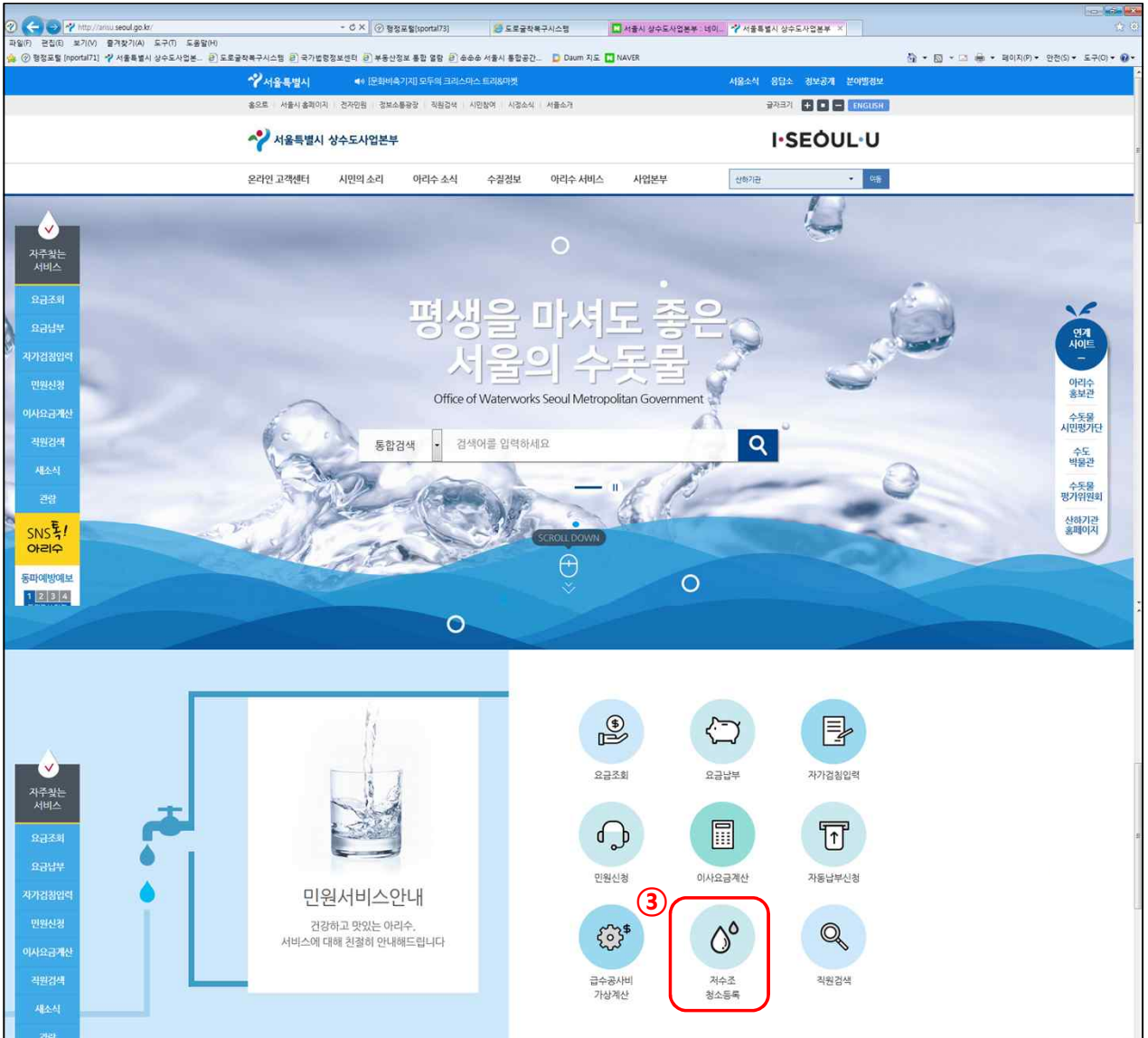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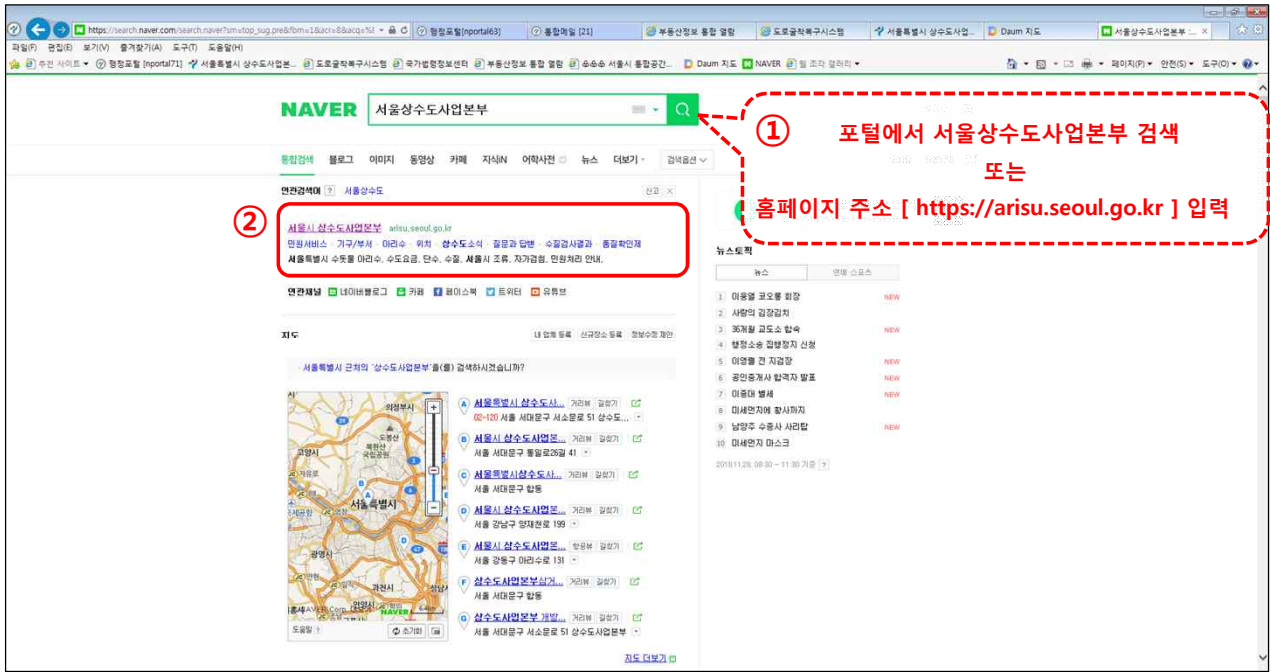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저수조 청소결과 보고 안내 (인터넷 등록)

(1page/5page)



저수조청소안내 :

평생을 마셔도 좋은 서울의 수돗물
 저수조(물탱크)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깨끗한 수돗물을 도출할 수 있으며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수돗물에 의한 질병을 받게 됩니다.

●● 특별공지 ●●
 2016년 구미시 '발성'시 신시장은 옥상물탱크에 침공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외부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침공장치 설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관련법규

- 수도법 제33조, 수도법시행령 제50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 및 서울시수도조제 제40조의2, 제40조의3

■ 대상시설

- 대형물탱크**
 - 연면적이 5,000㎡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 연면적 3,000㎡이상 사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으로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이상 학원, 지하도 상점가, 역사장
 - 적석수 1천석 이상인 공영관, 관할청 1천석 이상인 산내체육시설
 - 대규모 학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 소형물탱크**
 - 대형물탱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용출 및 생활용 물탱크

■ 청소의 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용역 받을 수 있음 (저수조청소업자를 통한 청소권함)
- ※ 서울시 관할 구청(중랑구 등)에 등록된 저수조 청소업체 안내 [백과가기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구청에 문의)

■ 관리방법

- 주요 저수조 관리내용**
 - 저수조청소는 반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6개월간격 청소권함)
 - 저수조청소업자에게 청소등을 대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관공사에 신고된 청소업자인지 신고일증을 확인하고 청소시 발생 청소장독원을 현장에 배시도록 한다
 - 청소의 격기
 - 상반기: 4월 ~ 5월(수온 상승에 따른 조류발생 시기)
 - 하반기: 9월 ~ 10월(질린물 증가시기 후)
 - 초, 중, 고교 등 학교의 경우,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개학직전: 상반기 개학전후 2~3월, 하반기 개학전후 8~9월
 - 수도법 시행령 50조의 대형건축물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 1회이상 역분출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검사결과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소(행) 직전 실시권함)
 - 저수조 위생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저수조청소 및 위생점검의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신속 저수조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 실시
 - ※ 발치(대형저수조):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83조 6호 규정에 의거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 발치(소형저수조):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의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법 제4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가 가능한 지역(수도)가는 직결 급수로 전환하면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 교육**
 - 대형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기관: 환경보건협회 서울분회(02-3407-1556~7)
- 청소방법**
 - 저수조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저수조 설치기준**
 - 저수조중 "저수조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시설은 빠른 시간 내에 개량하여야 한다.
 - 저수조 인출 유량은 방수 일체형으로 개량하고 침공장치 설치
 - 녹물방지기를 위하여 철재 저수조의 내면을 F.R.P 또는 세라믹으로 코팅하고 철재 사다리 등 부속시설은 스텐인레스로 교체
- 기타**
 - 대형 물탱크는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대형 물탱크는 월 1회이상 물탱크 위생상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등에서는 저수조의 수위를 낮게 조정하여 수돗물의 저수조 체류시간(12~24시간)을 권장할 정도의 물이 루지되기 바랍니다.
 - 지역 수도사업소 및 수질검사 기관 안내 [백과가기 >](#)

참고 1.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as.seoul.go.kr]
 - 건물연면적, 용도 확인 가능

참고 2. 서울시 등록 저수조 청소업체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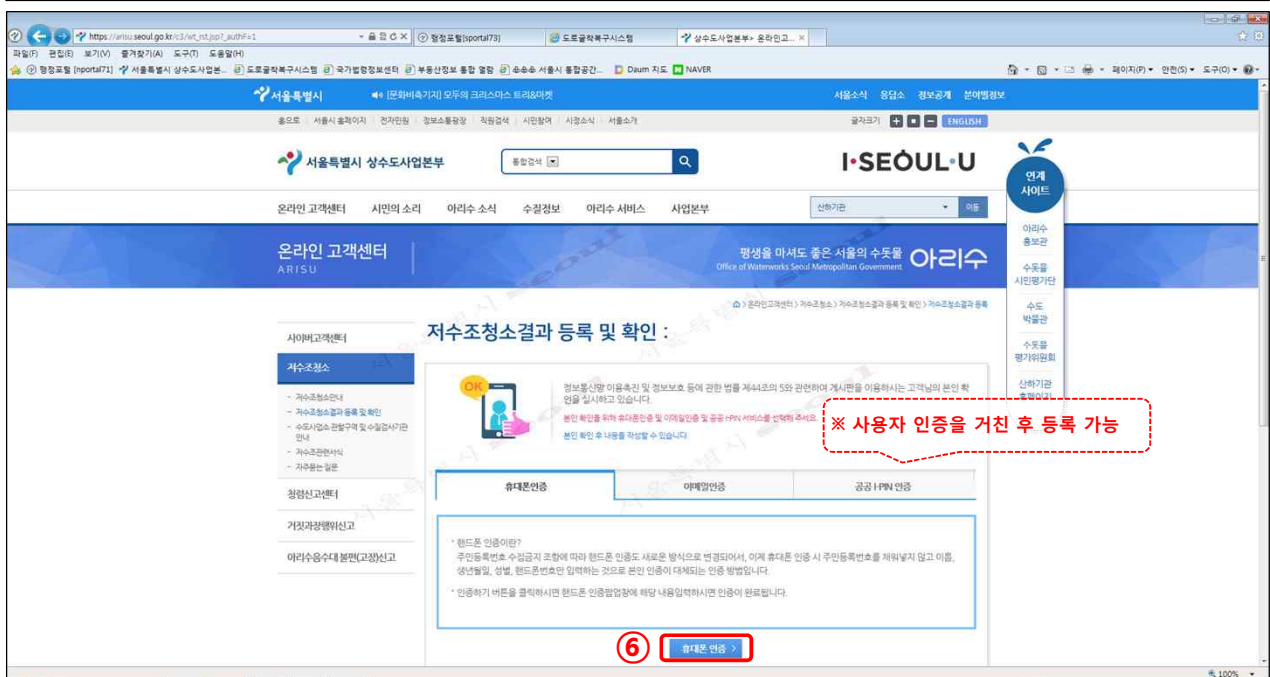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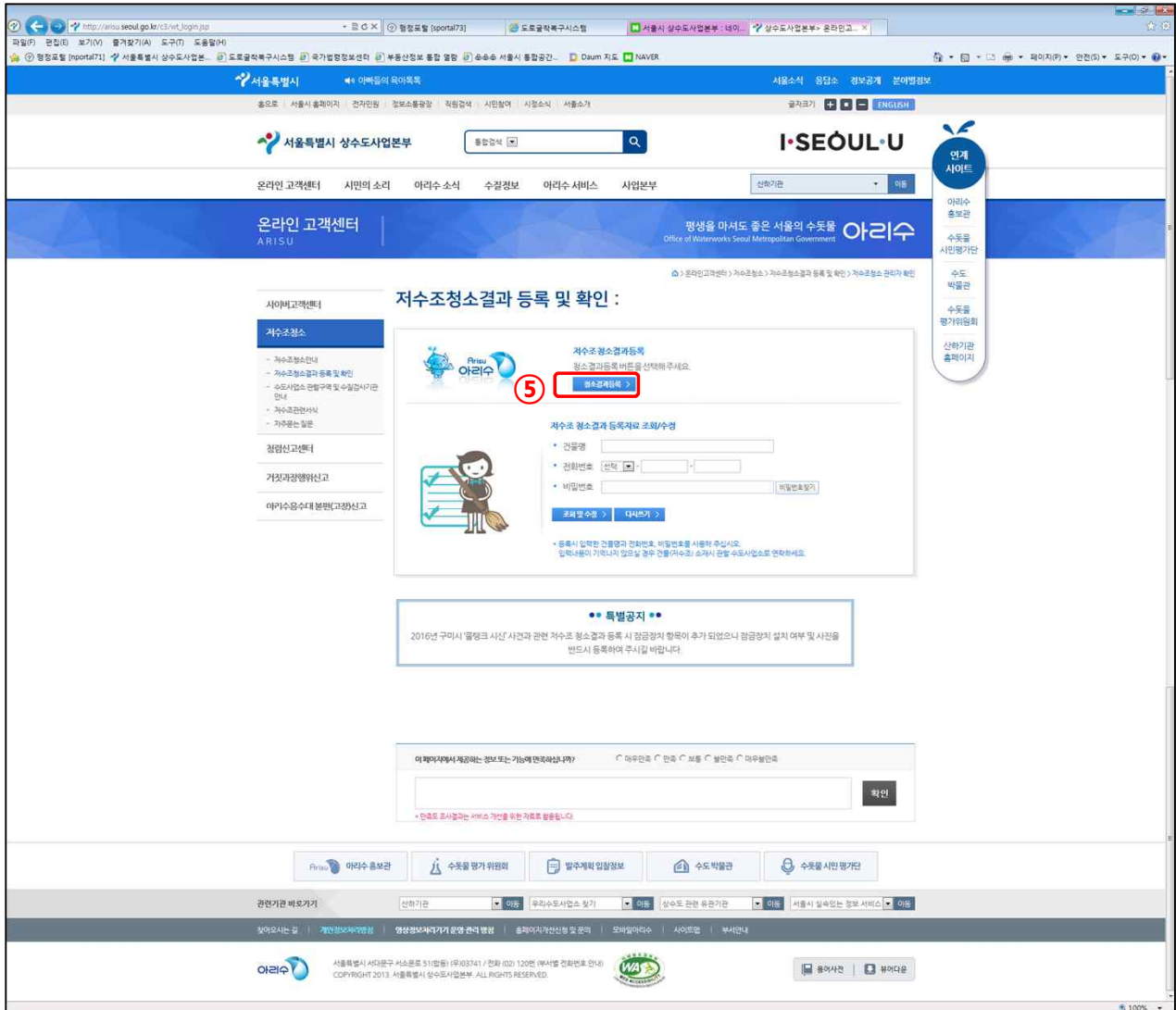
참고 3. 서울시 등록 수질검사 기관 목록

이제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PC로 보낼 발신료 무료발신료

* 인증코드서갈 때는 서비스 가입을 위한 지문도 촬영됩니다.

정보제공부서: 급수부 개혁신계과 담당: 이명석 전화번호: 02-3146-1416



The screenshot show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s '저수조청소결과 등록 및 확인' (Reservoir Cleaning Result Registration and Confirmation) page. The page is in Korean and features a blue header with the 'I·SEOUL·U' logo.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저수조청소결과 등록 및 확인' and includes a list of items to be registered. A red box highlights the '동의' (Agree) button, and a red circle with the number '8' is placed above it. Below the main content, there is a confirmation form with a '확인' (Confirm) button. The footer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and copyright details.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청소결과 등록 및 확인

수요가내역

배달신고년도: 선택

건물명:

소재지:

수용자 성명: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장)

관리자 성명: (담당관리자)

연락처(전화): 선택

배달번호: (등록확인 및 수정시 필요) * 배달번호는 0-30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를 순서대로 입력하십시오.

배달번호 확인:

시설내역

건물연면적: 제 건물연면적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기재)

매입연구유: 개동 세대

구분	용량(바)	수량	재질	용량(바)	수량	재질
저수조 규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저수조 관련서식의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사용
(매월 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 일괄작성 불가)

건물관리자의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현황 기입
(청소업체 담당자 기입 불가)
※ 소형저수조 선택사항 / 대형저수조 필수사항

저수조 수질검사 및 부식억제제

수질검사 시행여부: 시행 미시행 (책임인증(소형저수조))

부식억제제 시행여부: 시행 미시행 (사용할 시 5ppm이하 사용)

저수조 입회인 명단

번호	성명	전화번호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저수조 청소결과 사진 업로드

각하 저수조 청소현황 사진(전) (5000k 이하)

각하 저수조 청소현황 사진(후) (5000k 이하)

고가 저수조 청소현황 사진(전) (5000k 이하)

고가 저수조 청소현황 사진(후) (5000k 이하)

고가 저수조 청소현황 사진(전) (5000k 이하)

고가 저수조 청소현황 사진(후) (5000k 이하)

점검장처 현황 사진 (5000k 이하)

9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http://krras.seoul.go.kr>)
- 건물연면적, 용도, 준공일, 층수 등 확인 후 기입
- 층수는 지상층수 기입

저수조 용량은 개별 저수조의 용량을 기입한다.
(단, 저수조 수량이 기입가능 수량을 초과 할 경우에 한하여 동일 재질별로 묶어서 합산 용량 기입 가능)
예시) 20ton FRP 저수조 2개의 경우
① 용량→"20", 수량→"2", 재질→"FRP" 기입
② 용량→"40", 수량→"1", 재질→"FRP" 가능

저수조 관련서식의 「저수조 위생점검기준」 사용.
(매월 각 1부씩 작성하여 보관, 일괄작성 불가)

건물관리자의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현황 기입
(청소업체 담당자 기입 불가)
※ 소형저수조 선택사항 / 대형저수조 필수사항

건물 관리자 변경 발생시 변경된 건물관리자의 교육이수현황을 수정 기입하여야 함

최소 2인 이상의 입회자 및 연락처 기입 필수
※ 청소수행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관리자 및 입주자 이외에 청소용역업체 직원이 포함되어서는 안됨.

지하 저수조 또는 고가 저수조가 각각 2개소 이상인 경우 각 개소별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취합하여 등록
※ 저수조의 수량과 사진의 수량이 일치하여야 함.
※ 사진촬영 시 「주소, 일시, 위치(지하 or 고가)」 등의 저수조 정보가 기입된 보드판이 함께 촬영되어야 함.
※ 사진 양식 미준수 및 누락시 청소인정 불가

○ 건물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필수 (청소업체 담당자 기입 불가)
○ 추후 확인 및 수정을 위한 비밀번호 설정

잠금장치 설치여부 확인

잠금장치가 설치된 사진 첨부 (사진 미첨부 시 인정불가)